

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11. 29.(목) 16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김충식 부위원장

홍성규 상임위원

김대희 상임위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양문석 상임위원 (1인)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○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○ 제62차 회의의 회의록 및 속기록, 제63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-1.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

○ 국회에서 2009년 제54차, 2011년 제59차, 2012년 제62차 회의의 속기록 제출을 요구함

○ 이 중 비공개로 진행된 「EBS 사장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」(2012년 제62차)은

- 명예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면접 대상 후보자의 득표 수 및 성명을,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언위원, 사무국 보고자 및 면접위원의 성명을 음영처리하고, 나머지 안건은 음영처리 없이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함

⑥ 의결사항

가. 201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- (2012-65-260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2012년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3개 방송국(KBS경인제1DTV방송국, KBS한민족방송단파방송국, KBS제3표준FM방송국)의 재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KBS경인제1DTV방송국

<재허가 조건>

·'13년도 자체 프로그램 제작 계획을 '12년 12월 31일까지 수립·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분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

·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국 허가제원 조정,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 시책을 충실히 준수할 것

·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, 혼신이 발생할 경우 시설자의 부담으로 혼신을 해소한 후 운용할 것

·방송구역 내의 음영지역 해소 등 디지털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것

·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

<권고사항>

·방송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시청자에 대한 이용행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방송 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국 운영 등에 반영할 것

·경기·인천지역 주민을 위한 독자적인 시청자 권익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

·프로그램 제작, 인력 운영, 기술 등 KBS경인제1DTV방송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

② KBS한민족방송단파방송국·KBS제3표준FM방송국

<재허가 조건>

·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,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

·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국 허가제원 조정, 주파수 회수, 재배치 등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

·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

·국제전파규칙(RR) 제12조에 의한 계절별 주파수사용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하며, 국제분쟁 발생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할 것(KBS 한민족방송단파방송국에 한함)

<권고사항>

·방송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청취자에 대한 이용행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방송 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국 운영 등에 반영할 것

※ 재허가 유효기간 : 한국방송공사가 허가받은 타 방송국 유효기간과 동시에 끝나도록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1년(2013.1.1~12.31)으로 함

나. 2012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- (2012-64-261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2012년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부산문화방송(주) 등 7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6개 사업자(한국방송공사, 부산문화방송(주), 대전문화방송(주), 광주문화방송(주), 제주문화방송(주), 대전방송(주))의 방송국은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고, 춘천문화방송(주)의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보류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< 재허가 조건 >

사업자명	조건 내용
4개사 공통 (한국방송공사, 대전문화방송(주), 광주문화방송(주), (주)대전방송)	○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방송보조국 구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, 그 이행결과를 구축 즉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방송보조국 구축기한은 준공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.
광주MBC	○ 2013년 12월 31일까지 '삼공' 방송보조국 구축을 완료하여야 한다.

※ 재허가 대상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

다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변경허가 및 기간통신사업자 법인합병 인가에 관한 건 - JCN울산중앙방송(주), (주)씨앤엠울산케이블티비와 법인합병 - (2012-65-262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15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1항에 의거, JCN울산중앙방송(주)의 '(주)씨앤엠울산케이블티비와 법인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및 인가'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부로 허가 및 인가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< 변경허가 및 인가조건 >

1. JCN울산중앙방송(주)은 변경허가 및 인가일 이후 3년간 기존 차입금 이외의 추가적인 차입(지급보증 및 자산담보 포함)을 하지 않아야 한다.
2. JCN울산중앙방송(주)은 변경허가 및 인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 건전성 제고 계획('12~'16)을 방통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3. JCN울산중앙방송(주)은 변경허가 및 인가 신청 시 제출한 '지역채널 운영계획('12~'16)',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각종 '시설투자계획('12~'16)' 및 '가입자 보호 방안'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JCN울산중앙방송(주)이 제공하는 방송 및 통신서비스 품질이 본 변경허가 및 인가 이전과 비교하여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4. JCN울산중앙방송(주)은 매년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 변경허가 및 인가 조건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5. 변경허가 및 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해 방통통신위원회는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재무건전성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 적용할 수 있다.

라. **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변경허가,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에 관한 건** - (주)씨앤엠, (주)한국유선미디어 및 (주)디지털미디어넷 합병 등 - (2012-65-263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, (주)씨앤엠의 '주)한국유선미디어 및 (주)디지털미디어넷과 법인합병에 대한 변경허가' 신청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의결하고, 방송법 제15조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1항에 의거, (주)씨앤엠의 '(주)씨앤엠강남케이블티브이와 (주)씨앤엠경기동부케이블티브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주식소유(최대주주) 인가'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방송법상 변경승인 건은 승인하고, 전기통신사업법상 주식소유(최대주주) 인가 건은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< 변경허가 및 주식소유 인가 조건 >

1. (주)씨앤엠은 본 심사 시 제출한 2015년까지의 (주)씨앤엠 및 (주)씨앤엠강남케이블티브이에 대한 투자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
2. (주)씨앤엠은 (주)씨앤엠강남케이블티브이가 2013년말까지 차입(지급보증 및 자산담보 포함)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3. (주)씨앤엠은 (주)씨앤엠강남케이블티브이가 2010년말 확정된 이익잉여금 규모를 감소시키지 않고, 2016년까지 매년 계획한 투자를 집행한 후 발생하는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4. (주)씨앤엠은 본 심사 시 제출한 지역채널 편성계획 및 시청자 권익보호 방안을 이행하고, 방송 및 통신 서비스 품질이 본 변경허가 이전과 비교하여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5. (주)씨앤엠은 본 심사 시 제출한 향후 3년간 부채비율 개선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
※ '12년 419.5%, '13년 343%, '14년 300%
6. (주)씨앤엠은 매년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 변경허가 및 인가 조건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7.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 및 변경허가 및 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제5항의 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재무건전성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거나 수정 적용할 수 있다.

마. **WRC-12 결과 및 700MHz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등에 따른 「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」 및 「무선설비규칙」 등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** - (2012-65-264)

- 박윤현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세계전파통신회의 결과를 반영하고, 이용이 종료될 700MHz대역 무선마이크 등의 주파수를 정비하기 위한 「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」, 「무선설비규칙」, 「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」(고시)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①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(고시) 개정

(1) '12년 ITU의 세계전파통신회의(WRC-12)에서 개정된 전파규칙(RR)의 개정사항을 반영

- WRC-12에서는 항공·해상(약273MHz), 레이더(약302MHz폭), 과학(약1,650MHz폭), 방송·통신(약700MHz폭) 등 총 2.9GHz폭의 주파수가 분배되었고, 전파 혼간섭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건이 개정됨

(2) 700MHz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('12.12.31)에 따른 주파수 등 정비

- 현재 900MHz대역 7MHz폭(925~932MHz)인 무선마이크 주파수대역을 12.5MHz폭(925~937.5MHz)으로 확대하여 충분한 무선마이크용 주파수를 분배하여 무선마이크가 900MHz대역으로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함

(3) M/W 중계용 용도 통합

- 10GHz 이상 대역에서 특정용도(방송·통신 중계용)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되어 있는 주파수를 용도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전송링크용으로 용도를 통합함

② 무선설비규칙(고시) 개정

- 5GHz 무선랜 주파수대역(5150~5250MHz, 5250~5350MHz, 5470~5650MHz, 5725~5825MHz)에서 기존 보다 3배 이상 빠른 전송속도(300Mbps→1Gbps)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차세대 무선랜 표준을 무선설비규칙에 반영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개정

③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(고시) 개정

- 700MHz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이 종료('12.12.31)되고, 900MHz대역에서 현재 7MHz폭(925~932MHz)인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대역을 12.5MHz폭(925~937.5MHz)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

바. 「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」 등 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2-65-265)

-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에 의거, 2012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「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」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'12년도 경쟁상황 평가결과 전년도와 같이 시내전화는 KT가, 이동전화는 SK텔레콤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,
- 작년에 이어 「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」, 「전기통신 설비의 상호접속·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」는 KT의 시내전화, SKT의 이동전화로 지정·고시하고,

- 「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·절차·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」에는 SKT의 이동전화를 지정·고시함

○ 향후 일정

- 개정안 발령(관보 게재) : '12. 12월

사.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(안)에 관한 건 - (2012-65-266)

-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장애인·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, 공익성 심사제도 정비, 통계보고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장애인·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명확화·확대

- (개정사유) 장애인·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범위를 새로운 기술도입 및 서비스 활성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정비 필요
- (개정내용) 요금감면 서비스 확대 및 관련법 개정 내용 반영
 -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비스의 범위에 '아이앤티이천 이후에 도입된 이동통신 서비스'를 포괄
 - 휴대인터넷(WiBro)을 추가, '09년 이후 감면실적이 없는 무선호출은 제외
 - 「유아교육법」 상 차상위계층 근거 규정인 제26조(비용의 부담)가 삭제됨에 따라, 인용규정을 삭제(기존 수급자는 '13년까지 혜택 유지)

② 공익성심사 대상 사업자 확대 및 심사기준 정비

- (개정사유) FTA 확대로 통신시장에 외자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'기간 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에 관한 공익성심사' 제도 정비 필요
- (개정내용) 공익성심사 대상 사업자에 ①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 사업자와 ②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간 통신사업자 추가
 - 또한, 심사기준에 ①외교·통상 정책과의 부합, ②공정한 경쟁, ③중요통신의 안정적 제공, ④법령 준수 등을 추가하여 구체화

③ 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 고시 기준 명확화

- (개정사유)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후 이를 근거로 인가대상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이의 연계가 불명확하고, 규제대상을 매년 고시토록 하는 것은 행정낭비 요소가 있음

- (개정내용) “경쟁상황 평가”에 따라 획정된 “단위시장”에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인가대상서비스 등을 정함으로써 두 제도의 연계를 명확화하고,
- 규제대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, 해당 연도 고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

④ 기타 제도개선 등

(1) 통계보고 제도 개선

- 통계보고의 종류에 데이터 이용량을 명시
- 입법예고 된 ‘서비스별·지역별·접속구간별 데이터’를 ‘기술방식별·전기통신설비에 부하를 주는 트래픽별’로 수정(자체규제심사 권고)
- ‘서비스별’ 보다는 ‘기술방식별(2G, 3G, LTE 등)’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, ‘지역별·접속구간별’은 ‘전기통신설비에 부하를 주는 트래픽별(영상, SNS, 게임 등)’로 수정

(2) 번호안내서비스 개선

- 상호명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읍·면·동·도로명 단위 이하의 상세 주소를 번호안내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

(3)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서 재발급 신청 요건 개선

-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서 재발급 신청 사유에 상호, 대표자, 주소 변경 등을 추가

(4) 기간통신사업의 변경허가 사항 명확화

- 기간통신사업의 변경허가 사항을 ‘허가의 일부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’로 명확화

○ 향후 일정

-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: ‘12.12월 ~ ‘13. 1월
- 차관·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: ‘13. 1월

아. 2012-2013년도 접속료 산정 등에 따른 「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2-64-267)

-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2012~2013년 유선·이동전화망 및 인터넷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「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(이동전화) ‘11년 대비 지속적으로 인하(‘12년 인하율: Δ11.3%~Δ11.8%)

- 이통3사간 접속료 차등은 유지하되, 차등 폭은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

< 이동전화 접속료 산정안(단위: 원/분) >

구분	접속료			'12년 요율변화('11년 대비)	
	'11년	'12년	'13년	인하금액	인하율
SKT	30.50	27.05	26.27	Δ3.45	Δ11.3%
KT	31.75(4.1%)	28.03(3.6%)	26.98(2.7%)	Δ3.72	Δ11.7%
LGU+	31.93(4.7%)	28.15(4.0%)	27.04(2.9%)	Δ3.78	Δ11.8%

※ 괄호는 SKT 접속료 대비 후발사업자의 연도별 접속료 차등 폭

② (유선전화) 가입자선로(구리선) 유지 유인 억제 및 차세대망(FTTH) 전환 촉진을 위해 '11년 대비 지속적으로 인하('12년 인하율: Δ6.9%)

③ (인터넷전화) 접속료 인상(인상율: 10%)과 감면 유지(감면율: 23%)를 통해 유선전화와의 실질적 격차를 축소('11년: 3.82원/분 ⇒ '12년: 1.91원/분)

< 유선전화 및 인터넷전화 접속료 산정안(단위: 원/분) >

구분		접속료			'12년 요율 변화('11년 대비)	
		'11년	'12년	'13년	증감액	증감율
유선전화		18.57	17.45	16.74	Δ1.12	Δ6.9%
인터넷전화		10.48	11.52	11.44	+1.04	+10.0%
격차	기준금액	8.09	5.93	5.30	Δ2.16	Δ26.7%
	23%감면	3.82	1.91	1.45	Δ1.91	Δ50.0%

④ (후발사업자 감면 및 할인 등) 특정사업자만을 위한 지원은 축소하되, 전체 후발사업자의 접속료 면제·할인 수준 등은 현행 유지

7] 보고사항

가. 「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」 및 「무선설비규칙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o 국내 어선의 월북 방지, 입·출항 신고 자동화 및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「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」와 「무선설비규칙」(고시) 일부개정안을 박윤현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o 주요 내용

① 「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」 일부 개정

- 800MHz 대역 중 사업자 주파수 간 보호대역의 일부(30kHz, 1파)를 해양경비안전망용 주파수로 분배

② 「무선설비규칙」 일부개정

- 인접한 사업자용 무선설비에 혼·간섭을 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신설

※ 기술적 조건 : 공중선전력, 주파수허용편차, 점유주파수대폭, 불요발사 등

○ 향후 추진일정

-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위원회 규제심사 : 2012. 11 ~ 2013.1월
- 위원회 의결 및 관보게시 후 시행 : 2013. 2월

나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기간통신사업 간접투자 제한 완화, 도난·분실 단말기 유통 차단, 장애인 통신중계 서비스 법적근거 명확화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석제범 통신정책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 내용

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

- (개정사유)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한미·한EU FTA(한미 '12.3.15, 한EU '11.7.1 발효) 협정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
- (개정내용) 미국·EU계 외국인의제법인은 공익성심사를 통과한 경우 외국인의제 법인 적용에서 제외하여 100%까지 간접투자 허용(KT·SKT 제외)

② 국경간 공급 협정체결 의무 면제

- (개정사유) 국경간 공급 협정체결 의무를 면제하는 한EU FTA ('11.7.1 발효) 협정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
- (개정내용) EU에 대해서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(회선설비임대역무)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계약(국경간 공급 협정) 체결 면제

③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

- (개정사유) 전기통신서비스(SKTEL 이동전화서비스)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'13.9.22일 일몰토록 규정되어 있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연장 필요
- (개정내용)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('16.9.22일까지)

④ 분실·도난 단말기 유통 차단

- (개정사유) '12.5월부터 시행된 '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'의 정착을 위해서는 분실·도난 단말기의 유통을 차단할 필요
- (개정내용) 이동통신사업자간 분실·도난 단말기에 대한 정보 공유 의무를 부여하고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·조작행위를 금지

⑤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법적근거 명확화

- (개정사유)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는 이미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
- (개정내용) 통신중계서비스의 위탁운영기관 지정과 정부지원 및 사업자 비용 분담의 법적근거 마련

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

- (개정사유) 이통사는 통신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부정 가입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
- (개정내용) 통신서비스 부정가입을 막기 위해 방통위가 국가기관·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행정정보(예:주민등록정보)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⑦ 국제로밍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

- 시장경쟁이 활성화된 국제로밍서비스의 요금정산 협정체결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

⑧ 금지행위 및 사실조사 대상 정비

- 금지행위 및 사실조사 대상을 '대리점 및 판매점'으로 일괄 정비

⑨ 재정(裁定)규정의 법적근거 마련

- 분쟁사건의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방통위 재정(裁定)규정이 내부지침인 훈령으로 되어 있어 법령인 고시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 마련

○ 향후 일정

-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: '12년 12월 ~ '13년 1월
-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: '13년 1월 ~ 2월
- 차관·국무회의 및 국회 제출 : '13년 3월

다. 「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」 제정에 관한 사항

- 「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」에 근거하여 트래픽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·이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안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접수를 보류함

6. 폐 회 (17:50)